수소 충전소 규제

수소충전소는 크게 **부지 확보**, **기술검토**, **충전허가(변경허가)**, **시공 및 중간완성검사**를 거쳐야 한다.

안전 기준, 관련 법규, 인허가 등 검토사항이 방대하고 표준화된 수소청존소 구축 업무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지 확정부터 입찰 및 설비 구축에 1~2년이 지연되기도 한다.

**부지확보**

사업자가 수소충전소 구축 시 기본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을 적용받지만, 부지 확보 시

* 학교보건법
*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* 건축법 시행령
*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
*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개발제한구역법)시행령
* 각 지자체의 조례 고시등
* 위험물 안전 관리법 (융복합충전소의 경우)
* 철도 안전법
* 도로법 시행령

위의 법령에 적합해야 충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**학교보건법**

유치원, 대학 등의 학교 부지로부터 200m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힘들다. 설치한다 해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.

1. **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, 준공지역에서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. 녹기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은 조건부로 가능. (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다)

전용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계획관리지역, 지역환경보전지역은 설치가 불가능.

1. **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되는 천연가스 충전소는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2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 반면, 수소충전소는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.

1. **철도 안전법**

철도보후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.

|  |  |
| --- | --- |
|  |  |

1. **도로법 시행령**

도로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,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공작물에 포함하고 도로점용료도 50% 감면토록 했다.

**기타 수소관련 법.**

1. **연구개발특구법**

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은 연구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해 상업적 수소연료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.

1. **친환경자동차법 & 국유재산특례제한법**

개정해 전기차, 수소전기차등의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50%감면할 예정.

1. **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관란 특례기준**

충전설비 주위 8m이내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 제품 사용

수소품질 점검 주기는 종전 1일 1회에세 1주일 1회로 각각 완화, 안전조치(방호벽) 시 안전거리 (12~30m)유지 의무.

1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레고시.

이동식 충전소의 이동 충전이 금지되어 있다. =>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(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례고시)

1. 정압기지내 천연가스 개질공급설비 설치 특례 및 실증 작업.

<http://news.chungbuk.g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280>

규제 설명

<http://www.h2news.kr/news/article.html?no=6954>

**산업부,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 기준 개정 공포**

<http://www.gas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7283>